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6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5. 23.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 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」(대통령령)의 개정에 따라
- 동령과 맞게, 행정기구의 명칭과 사무 분장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 골자

- 국 명칭의 변경 : 건설도시국 → 건설교통국
- 사무 분장 조정
 - 교통 관련 업무 : 지역경제국 → 건설교통국
 - 상·하수도 관련 업무 : 건설도시국 → 보사환경국
- 사무분장 용어정비 : 중기 → 건설기계

□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및 별표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건설도시국”을 “건설교통국”으로, “제10조 (건설도시국) 건설도시국”을 “제10조 (건설교통국) 건설교통국”으로 한다.

제6조 보사환경국 사무 분장 중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상·하수도의 관리와 보급

제9조 지역경제국 사무 분장 중 “7. 교통행정의 종합 기획”을 삭제하고, “8호”를 “7호”로 한다.

제10조 건설교통국의 사무 분장 중 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7호의 “중기”를 “건설기제”로 한다.

1.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